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9. 2. 이흥민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9. 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0. 9. 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

1) 제안이유

마포구 주거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,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집단에너지 공급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건설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의 대상 및 조건(안 제5조~안 제7조)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1)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라 마포구 일부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난방을 에너지 복지향상, 연료비 절감,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.

2)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9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건설비용의 대출이나 대부할 때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3)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2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립됨에 따라 에너지생태계가 미세먼지,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좀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.
- 마포구 공동주택은 66,582호³⁾로서 전체 주택호수 118,619호 대비 56%에 해당하며 난방 형식 중 개별난방 및 지역난방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약70% 임.
- 또한,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8조제1항은 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

3) 제34회 마포통계연보(2019)

다’ 라고 규정되어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‘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조례가 지출근거를 직접규정하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정책과 법적·제도적 근거에 따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차원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
다만, 특정 지역에 편중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정의 부담정도를 파악하여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, 융자금과 관련된 이자 지원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세밀한 시행규칙을 세워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